

<p>239교(8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4,733명(중 48, 고 4,685), 20억 4,784만원 ○ 실직자 자녀 중·고생 학비 감면 -181,176명(중 52,884명, 고 128,292명), 255억 2천만원 ○ 중식지원 대상 학생 급식비 지원 -35,947명(초 18,216, 중 4,511, 고 12,870, 기타 350), 62억 1,893만원 <p>□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행정업무 위임전결제 및 스쿨뱅킹제 확대 실시 ○ 신·개축시 교원 연구실 설계 : 77교(초 54, 중 10, 고 10, 특수 3) ○ 학교 유아방 운영 : 53교(초 40, 중 13) <p>□ 책임 행정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감사제도 운영 : 설문조사 및 감사참관제 실시 ○ 명예감사관제 운영 : 15명(언론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 전문감사팀제 운영, 감사요원 직무교육 실시 	<p>것임.</p> <p>3. 주요골자</p> <p>가.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를 월 50만원에서 →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 20만원으로 인상(안제2조)</p> <p>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토록 하며, 일액을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안제3조)</p> <p>다. 여비의 지급기준 관련조항을 정비(안제5조)</p>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12.3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인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하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규정에 맞게 인상토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다만, '98.2.24 “국내여비규정”과 “국의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어 이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미리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2년여 동안 방치한 것은 비록 규정의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어 현 시점에서의 개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정비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2000. 1. 31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0. 2.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p>2.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1999.12.31자로 개정(대통령령 제16,672호)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준용규정에 맞게 인상하고, 1998.2.24자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대통령령 제15,680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여비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2000.1.31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하여 2000.2.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p>2.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12.31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용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본 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함. <p>3. 주요골자</p>

<p>○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함.</p> <p>4. 검토의견</p> <p>○ '99.12.31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해당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문제점 없음.</p> <hr/>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제2조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10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회기수당) 회원에게는 회기일수에 일액 80,000원을 곱한 금액의 회기수당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교육위원회의 회의(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p> <p>제5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 및 별표 7 국외준비금지급정액표에서 의장·부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hr/>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